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	**제출연월일**	2019.09.04.
위 원 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2020.3.21.)종료 예정에 따라 향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 등 장기적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에 대비한 기금 유지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제목 변경 : ‘기금의 존속기간’ → ‘기금의 존속기한’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7.26. ~ 2019.8.15.)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 : 평가제외 대상

5)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 : 존속기한 연장 可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Ⅱ. 검토 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의 설치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3.22.일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 당시(2010.3.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3.21.일로 10년이었으나, 2015.7.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로 기한이 한정되었음.

○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2024.12.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연도별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우면2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4,138,321천원이 적립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초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2,893,649천원이 적립, 2013년에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15,081,672천원이 적립되어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071,912천원인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말까지 집행 실적이 없으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청소종합시설 개선 사업 중 간이재활용선별시설 신규 설치를 위하여 2,420,000

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연도별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우면2 국민임대	413,833	3,724,488	-	-	-	-	-	-	-
서초 보금자리	-	578,730	868,100	1,446,819	-	-	-	-	-
내곡 보금자리	-	-	-	15,081,672	-	-	-	-	-
이자수입	-	1,810	110,727	380,717	652,360	515,033	353,449	485,287	458,887
소 계	413,833	4,305,028	978,827	16,909,208	652,360	515,033	353,449	485,287	458,887
지 출	0	0	0	0	0	0	0	0	0
연도별 조성액	413,833	4,718,861	5,697,688	22,606,896	23,259,256	23,774,289	24,127,738	24,613,025	25,071,912

※ 2018년 말 기금 조성액 : 25,071,912,693원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9조에서 제목을 ‘기금의 존속기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또한 안 제9조제2항에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정되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서초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참고1 관계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